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는 등의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도로, 주소 지정 대상 공부, 사물주소 및 도로명주소 등의 부여·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 및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통보(안 제4조)

- 1) 공공기관의 장이 주소정보의 부여·변경·폐지 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전·철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허가 또는 시행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2) 신속·정확한 도로명 부여·변경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구

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할 내용을 명확히 함

나.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 및 국가기초구역 설정(안 제5조제5항 및 제41조)

- 1)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는 해당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도로명, 건물번호 순으로 표기하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할 때의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예비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군·구청장 등에게 인계하도록 함

다.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도로 등(안 제6조 및 제9조)

- 1) 법 제2조제1항나목에 따른 도로를 「건축법」 제2조제11호,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건물이나 시설물의 내부에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함
- 2) 건물등이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 설치되고 있어, 도로의 구분기준에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등의 내부에 설치된 내부통로 등을 신설하고, 입체도로와 내부통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3) 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된 명사’의 종류에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추가함

라. 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안 제17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및 도로구간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기초번호의 변경 등을 추가함

마.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지(안 제33조)

- 1)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등과 관련하여, 고지 대상자가 원하거나 시·군·구청장 등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팩스,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2) 도로명의 부여·변경·폐지 등과 관련하여 주민 등이 의견 제출이나이의 신청을 할 때,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추가함

바. 주소 정정 대상 공부(안 제34조 및 제36조)

- 1)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하여야 하는 공부의 종류를 별표1과 같이 정함
- 2) 도로명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 국민의 신청을 받아 각종 공부상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할 수 있는 ‘주소 일괄정정 신청’ 대상 공부를 현행 4종에서 12종으로 확대함

사. 사물주소의 부여 및 의견수렴(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 1) 옥외 대피시설, 버스·택시 정류장 등의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의 표기는 도로명주소와 혼선이 없도록 행정구역, 도로명, 사물번호 다음에 ‘시설물 유형의 명칭’을 붙여 쓰도록 함
- 2) 사물번호는 시설물마다 하나씩 부여하도록 하고, 시설물이 위치하는 장소별로 사물번호의 부여 기준을 마련함
- 3) 시·군·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아.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주소정보의 보호(안 제57조제3항 및 제58조)

- 1) 비공개·공개제한 또는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주소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함
- 2)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등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자료 등으로 한정함

자. 주소정보의 사용 및 주소정보 산업의 지원(안 제63조 및 제64조)

-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소정보·구역정보의 구축·갱신,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표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유형의 개발·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주소정보 부여·정제·변경 산업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안 제65조 및 제66조)

- 1)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소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2)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 지원, 외국의 주소정보의 수집·분석,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명확히 함

카. 도로명주소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72조)

도로명주소·국가지점번호·사물주소 등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별표 2와 같이 정함

타.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4조)

- 1)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면 동의서 징구, 고지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2) 현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중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위탁 대상 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대상 기관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국

토안전관리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새로이 부여하려거나 변경하려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어떤 도로명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명 전체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별도로 도로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이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5. “공보등”이란 공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6 “도로명주소사용자”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주(서면 동의는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대리할 수 있다)

나. 「상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다. 「민법」에 따라 등기한 법인의 대표자

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주소가 같은 외국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이를 한 명으로 본다)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건물소유자

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최종 관리 책임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정보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8조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자료의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의 부여·변경·폐지 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이전·철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허가 또는 시행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건물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멸실에 관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등의 설치·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이전·철거에 관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실을 통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도로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2.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3.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종점, 주요 통과지 및 도로의
총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의 이름
2. 시·군·자치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항에서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공동주택
의 이름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③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하여 동(棟)번호, 층(層)수 또
는 호(號)수로 표기한다.

1.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
록한 동(棟)번호, 층(層)수 또는 호(號)수
2.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동·층·호를 도로명주소대장에 등
록한 동(棟)번호, 층(層)수 또는 호(號)수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棟)번호, 층(層)수 또
는 호(號)수

④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
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결
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경우 그 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2.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⑥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도로구간의 설정 대상 등) ① 도로구간의 설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4.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통로 및 같은 법 제220조의 주위통행권에 따른 토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 도로
6.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해당 건물군 안의 통행을 위한 통로
7.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사람이나 그 밖에 이동수단이 통행하는 통로(수직이동과 수평이동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부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통로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지하 및 고가도로 등이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나.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다.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 중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2. 입체도로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내부통로

가. 건물등의 안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건물등이 아닌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③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도로구간을 나타내는 선형

3. 도로구간의 관할 행정구역(시·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제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4.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유형별 구분

제7조(도로구간의 설정·변경 및 폐지 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구간의 설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에서 도로망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구간도 연결시킬 것

2. 도로의 폭·방향·교통 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것

3. 직선에 가까울 것

4. 일시적인 도로가 아닐 것. 다만, 하나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간이 공사 등의 사유로 도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경우라도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길게 설정할 것. 다만, 길에 붙이는 도로명에 숫자나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갈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6. 도로구간은 다음 각 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할 것

가. 입체도로 및 내부통로

나. 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된 측도가 발생하는 도로
다. 교차로

라. 종전의 도로구간과 신설되는 도로구간이 한시적으로 함께 사용
되는 도로

7.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강·하천·바다 등의 땅 모양과 땅 위 물체, 시·군·구의 경계
를 고려할 것. 다만, 길의 경우에는 그 길과 연결되는 도로 중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로를 시작지점이나 끝지점으로 할 수 있
다.

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서쪽과 동쪽을 잇는 도로는 서쪽을 시작지점으로, 동쪽을 끝지
점으로 설정하고, 남쪽과 북쪽을 잇는 도로는 남쪽을 시작지점으
로, 북쪽을 끝지점으로 설정할 것. 다만, 시작지점이 연장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
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시·군·구의 행정구역 경
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도로구간 간에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같은 방
향으로 연속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다
르게 설정·변경할 수 있다.

1. 같은 방향으로 연속되어 같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은 가급적

기초번호가 5자리 이상이 되도록 하지 말 것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부여방법에 맞게 도로망을 설정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과 다르게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에서 고속도로

2.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체도로

3.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내부통로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⑥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구간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등) ①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 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번호를,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그 간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설정된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에 기초번호를 부여·변경할 때는 시·군·구가

달라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연속해서 기초번호를 부여한다.

③ 제7조제4항 각 호의 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다르게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도로명의 부여·변경 기준) ① 하나의 도로구간에는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한다.

② 도로명으로 사용할 주된 명사는 다음 각 호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결하게 정한다.

1. 지역적 특성, 지명
2. 위치에측성, 영속성
3. 역사적 인물 또는 사건
4.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관련한 사항

③ 도로명으로 도로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2항의 명사에 숫자나 방위 등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명사 뒤에 붙인 숫자나 방위 등도 주된 명사의 일부로 본다.

④ 도로명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고속도로는 제외한다)까지의 도로:
제2항에 따른 주된 명사 뒤에 “대로”, “로”, “길”을 붙여 부여(주소정보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로”와

“로” 또는 “로”와 “길”의 기준을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2.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고속도로: 주된 명사 뒤에 “고속도로”를 붙여 부여

3. 제6조제2항제2호의 입체도로: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여 부여

4. 제6조제2항제3호의 내부통로: 내부 통로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칭을 포함하여 부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명은 해당 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군·구를 합치거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도로명이 중복된 경우 각각의 해당 도로구간의 위치가 행정구 또는 읍·면으로 구분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같은 시·군·구 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주된 명사 뒤에 붙은 “대로”, “로”, “길”만 달리한 경우도 같은 도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같은 시·군·구 내에서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로명(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구간이 폐지된 경우를 제외한다)

3. 시·군·구를 달리하더라도 해당 도로구간의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용 중인 도로명(동일도로명은 제외한다)

⑥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여 도로명을 변경하지 않기로 공고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⑦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명 부여는 법 제8조제4항의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로명 등의 부여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기초번호 간의 간격(“기초간격”이라 한다)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3. 도로의 길이와 폭

4.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부여 절차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 및 도로명·기초번호를 설정·부여하고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명 등의 부여 절차)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도로구간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또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도로명등을 부여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도로구간의 설정 및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 각 호 및 제4항제2호의 사항

2. 주민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설정·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하고 공고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에 관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하고, 제3항에 따른 “20일”은 “30일”로 한다.

⑩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 부여 등에 관한 신청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도로명 변경 신청을 위한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사용자의 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과 해당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2.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도로명주소사용자
3. 동일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동일도로명과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4.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도로명주소사용자

제13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변경 전·후의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및 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3. 해당 도로명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3.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2. 변경의 절차(변경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3항의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사용자가 많아 서면 동의가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공보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로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후의 제6조제3항 각 호의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사유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현황
5.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6.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3.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4.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해당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도로구간에 속하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의 현황

4.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2. 변경의 절차(변경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사용자가 많아 서면 동의가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 및 통보하고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하고, 제2항에 따른 “30일”은 “40일”로, 제6항의 “60일”은 “90일”로 한다.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현재의 도로명 및 부여 사유
3.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4.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그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및 의견제출자의 범위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 · 후에 관한 사항
3. 도로명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의 현황

4.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및 요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2. 변경의 절차(변경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사용자가 많아 서면 동의가 지연될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해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제4항제1호의 기준일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인 경우

2. 새로 사용될 도로명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3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예비도로명(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예비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거나 제5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 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변경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로구간이 소재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3.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전·후에 관한 사항
4. 도로명 변경으로 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도로명주소사용자 현황

5.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현재의 도로명 및 부여 사유

2.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사유

3.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신청인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제시한 예비도로명을 말한다)과 사유

4.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한 사항(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함께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을 포함한다)

5.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및 의견제출자의 범위

6.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주민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4.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
5.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결과
2. 변경의 절차(변경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한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사용자가 많아 서면 동의가 지연되는 등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서면 동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일
청일

2. 제1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공고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
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자가 제7항제1호의 기준일에 따른 도로명
주소사용자의 과반수인 경우

2. 새로 사용될 도로명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가 현재의 도로명을 예비도로명(2개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 예비도로명
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

⑨ 제6항에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서면 동
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거나 제8항에 따라 서면 동의를 생략한 경우에
는 그 서면 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 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청인과 해당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 및 통보하고,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⑪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한 절차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하고, 제3항의 “30일”은 “40일”로, 제7항의 “60일”은 “90일”로 한다.

제17조(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과 그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의견수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서면 동의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나.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2. 서면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가. 건물등 및 시설물에 부여할 기초번호가 없어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개발사업 지역과 인접(隣接)한 도로구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의 유형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라. 도로명에 포함된 기초번호를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맞게 정비하려는 경우

마. 제7조에 따른 도로구간의 설정·변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경우

바.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도로구간 선형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초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물등의 명칭(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건물군을 포함한다)과 유사한 명칭으로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2.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도로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도로명 등의 폐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

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및 기초번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폐지되면 도로명과 기초번호도 함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도로명 등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고시 및 고지 사항)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 또는 기초번호를 부여할 때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2. 도로의 길이와 폭
3.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4. 부여하는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의 설정·부여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효력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일을 효력발생일로 본다)
6.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신청 등 효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을 포함하는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변경 전·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
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
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구간만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도로구간의 변경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다.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초번호만을 변경하는 경우

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라. 기초번호의 변경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마.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의 변경을 포함하는 도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과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기초번호

다.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고시일 및 효력발생일

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등에 따른 효력에 관한 사항

마.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사유

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상세주소는 제외할 수 있다)와 사물
주소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를 포함하는 도로구간을 폐지하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의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의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효력발생일은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 외의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9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0조(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등의 설치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교체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

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변경·폐지한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지주등에 표기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정정·교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주등에 표기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정정하거나 교체·제거하고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말 것

제22조(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
2.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4.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 정보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3.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에 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4. 명예도로명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또는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고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부여된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제2항제1호·제3호·제5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가 명예도로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도로명의 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로명을 폐지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명예도로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
2.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도로구간 시작지점 및 끝지점
3. 폐지하려는 명예도로명의 폐지일과 폐지 사유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①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② 건물번호는 건물등마다 하나씩 부여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에는 각 출입구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건물등 또는 시설물의 내부에서 벽체 등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2. 하나의 건물등의 내부에서 서로 통하지 않은 둘 이상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물등에서 “층” 또는 “호”가 각각 서로 다른 출입구로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전체를 하나의 건물군으로 하여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주된 건물등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등(동식물 관련 시설, 화장실 등)을 하나의 건물군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건물등이 서로 다른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고 하나의 건축물대장 또는 하나의 집합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건물등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실제 하나의 집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④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군 안 통로에 도로명을 부

여한 경우에는 건물등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한다.

⑥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건물번호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2. 변경 사유
3. 변경 절차와 효력
4.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건물번호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를 변경하기로 한 때에는 제2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소유자·점유자·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물번호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인(의견 제출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을 폐지일로 하여(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을 말한다) 14일 이내에 건물번호를 폐지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의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변경

되는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도로명주소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 기초번호의 변경
2. 제15조제7항 및 제16조제1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제25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따른 고시 및 고지 사항)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시하는 경우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고지하는 경우

가.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및 효력발생일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다. 도로명주소의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변경·폐지할 때 고시 및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및 효력발생일

나.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변경을 고지하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및 효력발생일

나. 변경 사유

다. 도로명주소 관련 지번에 관한 사항

라. 도로명주소의 활용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 신청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폐지를 고지하는 경우

가. 폐지하는 도로명주소와 폐지일

나.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하거나 고지한 날

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

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등은 주택법 제2조제19호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물등을 말한다.

1. 하나의 건물번호가 부여된 건물등의 동(棟)이 다른 경우
2. 건물등의 외벽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3. 건물등의 내부에서 복도나 계단 등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경우

②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棟):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2. 층(層):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3. 호(戶):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③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부여하거나 변경한다.

1. 동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한다.
2.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한다.
3.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의 호로 구분하여 호수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가나

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인다.

④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동·층·호의 이동경로를 설정하고 이동경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순차성 있는 번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차성 있는 번호는 출입구에 인접한 번호를 말한다.

1. 출입구의 진입방향으로부터 순차성이 있도록 할 것
2. 출입구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순차성이 있도록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⑤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아라비아숫자

⑥ 상세주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지한다.

1. 건물번호가 폐지된 경우
2.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인하여 상세주소가 부여된 동·층·호가 멸실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주소의 세부적인 부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 절차) ① 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 등록 여부
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건물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상세주소 적용 범위
5. 상세주소를 부여할 동·층·호의 해당 출입구
6.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임차인(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인과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임차인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상세주소의 활용 방법

3. 상세주소의 부여 절차

4.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고 건물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제3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주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6항 각 호의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30조(상세주소의 부여·변경에 따른 고지 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할 때에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하는 경우

-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 나. 상세주소 적용범위와 해당 출입구
- 다. 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 라. 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변경하는 경우

- 가. 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후의 도로명주소
- 나. 변경 전·후 상세주소 적용범위와 해당 출입구
- 다. 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 라. 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세주소와 그 위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건설 계획
2. 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3.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도로 현황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마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지역주민과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구간 또는 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항

2. 부여하려는 도로구간의 제6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3.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및 부여 사유

4. 도로의 길이와 폭

5. 기초간격 및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6.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과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도로구간 및 기초번호를 포함한다)의 부여에 대하여 결정(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도지사는 도로명 부여에 대한 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도로구간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서를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공고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0일 이내에 제19조 제1항제1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의 통보를 받은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을 고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설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 부여)

①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배치도 및 평면도

2. 건축 인허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물번호를 부여하려는 경우

가. 건물등의 배치 및 인접 도로의 현황

나.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관한 사항

다.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에 대한 사항

라. 건물등의 인허가 사항 및 건물등의 사용 현황

2.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세주소 적용 범위

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려는 해당 출입구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 부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법 제1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 및 주소정보기본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항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인,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각각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고지·고시의 방법) ① 이 법에 따른 고지는 방문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팩스,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은 고시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의 폐지로 인하여 도로명주소사용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

31조제4항에 따른 의견 및 이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⑦ 제24조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34조(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공부의 주소 정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의 지주등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공공기관의 장
2. 소방청장
3. 경찰청장
4. 우정사업본부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가 부여·변경·폐지되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거나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이 영 제2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효력발생일 5일 전에 제25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1항 각 호 및 별표1의 공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의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주소정보를 검색·조회하는 시스템 등을 변경

2.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가. 주소정보를 검색·조회하는 시스템 등을 변경

나. 도로명주소의 부여: 해당 공부에 지번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변경

다. 도로명주소의 변경: 해당 공부에 등록된 종전의 도로명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변경

④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부에 등록된 종전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전·후의 주소 동일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주소를 정정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시 사항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각종 공부상에 표기하는 상세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건축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동번호·층수·호수는 이
영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35조(도로명주소의 사용)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제4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위치 안내를 위한 표지판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나 위 치 안내의 표시 방법에 관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란 다음 각 호의 공부에 등록하거
나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
대장에 기록하는 주소
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
라 작성·관리하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주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의 등록대장에 등
록된 주소
6. 「건설기술 진흥법」 제96조에 따른 공장인증대장에 등록된 주소
7.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의 기재하는 소유자·공유자의 주소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등록관리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나 대표자의 주소
9.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계량기사업자대장에 등록된 주
소
10.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주소 및 사
무소의 주소
11.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장 사무소의 주소
1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주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공부상의 주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소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문서상의 주소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공부에 등록된 주소를 정정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되는 주소지의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을 거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공부 중에서 주소정정이 필요한 공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정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공부를 관리·보관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소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주소정정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따른다) 이내에 주소를 정정하고 그 결과(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소를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2항의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기준)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자치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
3. 「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4.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5.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7.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 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 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 도로·철도·하천의 중심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경계
4. 임야의 경우 능선·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폐지할 수 있다.

1. 국가기초구역의 설정

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는 토지가 확인된 경우

나.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2. 국가기초구역의 변경

가.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인구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다.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기초구역 사업체 종사자 수(해당 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마. 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경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초구역의 폐지

가. 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재축·증축하여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국가기초구역의 활용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합하여야 하는 경우

제38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① 하나의 국가기초구역에는 하나의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한다.

② 국가기초구역번호는 5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시·군·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및 제41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시·도 및 시·군·자치구에는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로 인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순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비로 관리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예비기초구역번호”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⑤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폐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⑥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7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할 때에 함께 부여·변경·폐지한다.

제39조(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설정·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

가.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 부여하려는 예비기초구역번호

다. 설정·부여하려는 사유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에 관한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다. 변경하려는 사유

라.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마.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제1호라목·제2호라목은 제외한다)

2.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결과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결정한 후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국가기초구역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2. 공유수면 매립으로 경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3. 해면성 말소 등으로 인하여 경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4.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부여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행정구역이 결정되어 변경하려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보등에 고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행정

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에 국가기초구역등을 함께 설정하고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예비기초구역번호를 사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하거나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관리청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사업지역의 관리청 또는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지역의 도로구간의 설정 현황

2. 설정하려는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부여하려는 국가기초구역번호에 관한 사항

3. 설정 및 부여하려는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제4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통보받은 날부터 2

0일 이내에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부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고시한 국가기초구역등을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인수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인근 지역의 국가기초번호와 순차성있게 배열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변경에 따른 절차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할 때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2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거나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 제22조제6항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려는 경우

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설정·부여하려는 사유

마. 고시 예정일

바.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변경 전·후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고시 예정일

다.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및 폐지 고시 예정일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공표한 각종 구역의 표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여하거나 변경·폐지할 때 공보등에 고시할 사항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④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부

여하러는 경우 제41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공보등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2.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 및 기초번호
3. 부여하러는 사유
4.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국가기초구역등의 관리 및 안내)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제1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8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이력을 관리하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국가기초구역등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러야 한다.

1. 시·군·자치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현황
2. 설정·부여되거나 변경·폐지된 국가기초구역등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현황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절차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업무와 관련한 각종 관할구역을 국가기초구역 기준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등을 사용하는 각종 구역과 관련된 자료를 안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국가지점번호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미터인 격자를 기본단위로 하며,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기 위한 기준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국가지점번호는 제1호의 문자에 제2호의 번호를 연결하여 표기한다.

1. 제1항의 기준점에서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씩 나누어 각각의 방향으로 “가나다라” 순으로 부여한 가로방향 문자와

세로방향 문자를 연결한 문자

2. 제1호에 따라 나누어진 지점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가로방향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세로방향은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각각 10,000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정수를 연결한 번호. 이 경우 각 정수가 4자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4자리가 될 때까지 그 앞에 “0”을 삽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점번호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지점번호의 기본단위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문자만을 사용한다.

2. 국가지점번호를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각각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및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문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가. 10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한 자리 숫자

나. 1킬로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두 자리 숫자

다. 100미터 단위로 표기하려는 경우: 제2항제2호 따른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네 자리 숫자 중 앞의 세 자리 숫자

제45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지역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제1항의 고시 지역에서 지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설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가 예정된 시설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6조(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의 고시 절차 등) ① 시·도지사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시지역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고시지역의 경계 및 면적
 2. 고시지역 안의 지번에 관한 사항(필지의 일부가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3. 고시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폐지하려는 사유
 4.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2. 의견수렴에 따른 검토 결과
3. 시·도지사의 의견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의 설정·변경·폐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기준 등) ① 국가지점번호판은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분에 설치한다.

② 지주를 이용하여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면에서 국가지점번호판 하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분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때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규격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하는 업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또는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국가지점번호검증자”라 한다)에게 법 제33조에 따라 위탁한다.
-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려 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표기 및 설치하기 전에 해당 시설물(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를 위한 지주를 포함한다)의 위치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검증자에게 국가지점번호의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2항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내용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지점번호검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보 결과가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잘못된 것일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지점번호를 정정한 후, 그 결과를 국가지점번호검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주소정보기본도 등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검증을 신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점번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점번호검증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지점번호검증자는 제9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지점번호의 검증결과 및 검증과 관련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 검증의 방법, 검증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국가지점번호의 관리 및 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

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후의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시·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1년마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가 고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정보시스템에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0조(사물주소의 표기)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부여하는 사물주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표기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의 기준점에 부여한 번호(이하 “사물번호”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유형(類型)의 명칭

② 건물번호와 사물번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사물번호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부여된 사물주소의 표기는 제5조6항에 따른다.

제51조(사물번호 부여·변경·폐지의 기준) ① 사물번호는 시설물마다

하나씩 부여한다. 다만, 시설물의 기준점이 둘 이상일 때에 기준점마다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사물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시설물이 건물등 및 구조물의 외부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준점이 접하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용

2. 시설물이 건물등 및 구조물의 내부에 있는 경우

가. 내부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준점이 접하는 내부통로의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사용

나. 내부통로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물의 기준점에 제27조를 준용하여 부여한 번호를 사용

③ 사물번호가 부여된 시설물의 기준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물번호 부여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물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이 이전·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사물주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물번호 부여·변경·폐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신청 등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 절차)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통지는 시설물의 철거·이전하려는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

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결정한 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의 사물주소(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2.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일
3. 부여·변경·폐지하려는 사유
4. 시설물의 형상 및 기준점(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를 말한다)
5.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사물주소판의 설치 또는 변경·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및 지역의 여건,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직권에 의한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및 폐지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

라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형상 및 기준점(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항)
2. 인접 도로의 현황 및 해당 시설물에 부여하려는 사물주소(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물주소를 말한다)
3. 부여·변경·폐지하려는 사유
4. 사물주소의 활용 방법(부여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고 제5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따른 검토 결과가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물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력발생일에 사물주소를 변경하고 시설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정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및 지역의 여건,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정비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을 고지받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기본도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

· 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 부여 등에 관한 사항: 행정구역 경계와 행정구역명, 도로 구간과 도로명, 도로의 실폭(터널 및 교량을 포함한다), 기초간격과 기초번호, 필지의 경계와 지번 등
2.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건물등, 건물군, 동·층·호, 출입구, 건물 번호, 상세주소, 실내 이동 경로 등
3.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 부여대상 시설물의 위치 및 기준점, 사물번호 등
4. 공간에 관한 사항: 국가지점번호 격자 및 국가지점번호,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등
5. 구역에 관한 사항: 국가기초구역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 행정 읍·면·동, 행정 통·리, 경찰·소방·학군·통계 등 관할구역 등
6. 배경에 관한 사항: 철도, 호수, 하천 등
7.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사항
8.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소정보기본도의 품질을 높이거나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 ①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려는 자는 광고계획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작·배포·설치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작·배포·설치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제작·배포·설치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하려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광고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광고의 적합성
2. 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관한 사항
3. 광고계획서의 적정성
4.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도에 한한다)
5.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주소정보안내판에 한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는 것 일 때에는 광고를 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의 내용
2. 광고를 하려는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의 현황
3. 광고의 방법 및 기간
4. 광고 사업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소정보의 목록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제공하지 않는 주소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2. 제공하는 주소정보

3. 사용자와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

②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요청 없이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1. 제공 범위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인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제공 범위가 해당 시·도,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또는 제1호인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3. 제공 범위가 제1호 및 제2호,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자료의 이용 목적 및 요청 내용

3.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대책 및 보안에 관한 사항

4. 제공 방법(전산파일 제공 및 시스템 연결 등을 포함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이용 목적 등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주소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주소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시스템 간의 연계를 요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요청받는 주소정보가 전산파일 등으로 제공할 수 없거나 해당 전산파일 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
3. 시스템 간 연계를 할 수 없거나 연계를 위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기 전에 해당 주소정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분류하기 위하여 보안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료의 보호대책 및 보안 사항 등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⑩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제공할 때의 수수료 및 그 밖에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59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결정·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자료의 관리 및 공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주소정보시설의 정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국가지점번호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에 따른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정비 비용을 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단가

2. 비용 산출 전 설치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훼손 등을 한 자에게 통보할 때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일 때에는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 납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원인자 부담)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철거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사업 계획도 및 도로망

3.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계획

4. 법 제9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주등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는 그 인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발사업의 준공권자 또는 사용승인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4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였는지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른 건물등과 도로 등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 및 제5항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산한 주소정보시설의 예상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변경·폐지 및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계획
 3. 설치가 계획된 지주등에 표기할 도로명·기초번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제4항제1호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 ⑥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 전

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소정보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계획서
2. 주소정보시설의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제7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제1항제3호의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납부 예정일이 사업의 준공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사업의 준공일을 납부예정일로 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비용

을 납부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⑪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의 주소정보시설의 예상 설치비용과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예정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설치계획서(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제6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7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용을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⑬ 제12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용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서를 통보한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2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통보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63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제공
4.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에서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 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비치하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 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의 지원

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 주소정보와 그밖에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 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 사용 촉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64조(주소정보 산업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이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지원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제73조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를 부여·정제·변경하는 산업의 지원

7.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산업의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6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소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및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주소정보 등의 이용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법 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관리의 지원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의 지원
4. 제57조제8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6.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를 이용한 창업 공모전 시행 및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8. 외국의 주소정보 수집 및 분석
9. 그 밖에 주소정보의 수집·가공·제공·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

에 관한 사항

5.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

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명칭

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법 제29조에 따른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62조제7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8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 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행정청에 속하는 고위공무원단에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가. 기획재정부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다. 문화체육관광부

라. 국토교통부

마. 경찰청

바. 소방청

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9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0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제71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회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68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73조(지도·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4조(위임·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도로명(도로구간의 설정 및 기초번호의 부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제32조제4항에 따른 고지는 제외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 ③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6.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④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와 관련하여 설립을 인가한 비영리 법인
-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건물등·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에 따른 주소정정 대상 공부의
범위(제34조제2항 관련)

대상 공부 및 정정 사항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도로명주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도로명주소·위반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주소 4.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 주소 5.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 따른 건물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주소 6. 「민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상의 주소 7.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8. 「병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병적기록표상의 주소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부 및 수로사업등록부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10.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화일상의 사단·재단 사무소의 주소, 대표 또는 관리인의 주소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공개대상자의 주소 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치 및 주소 13.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의 영업소소재지 14.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상의 주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상의 영업소 소재지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7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사업자단체 등록상의 주소

1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 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업자에 관한 등록 사항의 소재지 및 주소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등록 사항의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
19.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상의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자 주소

[별표 2]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및 정보의 범위(제72조 관련)

1.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가구별 소유자·점유자·임차인·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사항
-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부
- 다. 「상업등기법」 및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인의 등기부
- 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사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사항
- 마.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중 19세 이상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에 관한 사항
- 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구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제적부 중 소유자·점유자·임차인·세대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
- 아. 건물등에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 대상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건축물의 멸실 및 사용승인 자료
- 차.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 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 파.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하는 도로의 인허가 및 승인 자료
- 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승인 또는 준공검사 자료
- 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 너.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등에 관한 자료
- 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의 지정 등에 관한 자료

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직접활성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 자료

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어. 법 제24조에 따라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관리자 현황

2. 국가기초구역을 설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

가.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른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 건물 유형별 현황 자료

나.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해당 지역의 거주자 수에 관한 사항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해당 지역의 사업자 수에 관한 사항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용도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현황 자료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따른 건축물 현황 자료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지번 및 경계 현황

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아.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자. 통계구역, 우편구역, 경찰구역, 소방구역, 학교구역, 행정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표하는 구역의 범위 자료

3. 국가지점번호의 표기·설치 및 관리하려는 경우

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자료

나.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결정·고시한 자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자료

라.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에 관한 자료

마. 각종 사고·구조 등에 관한 현황

4.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려는 경우

- 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에 관한 사항
- 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및 대피장소에 관한 사항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 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 마.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등기촉탁을 하려는 경우

- 가. 등기명의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나. 등기명의인이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25	50	1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개월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나.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받아 설치하지 않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	5	10	25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553